

보도시점 : 2024. 10. 31.(목) 06:00 이후(10. 31.(목) 석간) / 배포 : 2024. 10. 30.(수)

'교통부문 목표관리제'로 온실가스 32,667톤CO₂eq 추가 감축

- 31일 교통부문 목표관리제 역량강화 워크숍...시상 및 우수 사례 공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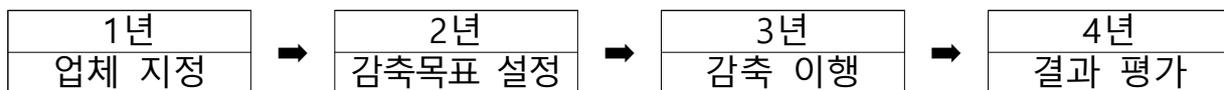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'23년 교통부문(해운, 항만 제외)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사업을 통해 32,667톤CO₂eq*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했다.

* 이산화탄소상당량톤(톤CO₂eq) :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등가의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

○ 이번 성과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것으로,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3년 동안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 5천톤 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전체 사업장 배출량이 5만톤 CO₂eq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*하는 제도이다.

* 업체지정, 목표설정, 감축이행 및 평가 등 총 4개년에 걸쳐 1주기 완료



○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교통부문(해운, 항만 제외) 목표관리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업체 선정,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

- '16년 시행 이후 약 374만톤CO₂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.

○ 교통부문에서 지난해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올해 평가를 완료한 업체는 총 28개이며, 실제배출량은 455,200톤CO₂eq으로 목표배출량 487,867톤CO₂eq 대비 32,667톤CO₂eq을 추가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.

* (예상배출량) 502,953톤CO₂eq, (목표배출량) 487,867톤CO₂eq, (실제배출량) 455,200톤CO₂eq

- 이는 약 16,500가구의 연간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진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오전 교통부문 목표관리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교통부문 목표관리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.

○ 이 자리에서 평안운수(최우수)가 국토교통부장관상을, 시흥교통(우수)과 남성버스(우수)가 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을 수상*하며, 이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례들을 논의할 예정이다.

* 온실가스 감축활동 노력, 감축활동에 따른 감축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○ 시상에 이어 유사사업인 배출권거래제 우수 감축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교통분야 탄소감축 방안을 토론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“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관리업체들이 단순히 설정된 배출목표만을 이행하는 소극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추가 감축노력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”면서,

○ “국토부는 앞으로도 목표관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매년 우수 기업을 선정·시상함은 물론, 다양한 감축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○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“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시상 및 교육, 제도이행 컨설팅 지원 등 체감이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, 나아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부서 <총괄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주열 (044-201-3823)
		담당자	서기관	김광수 (044-201-3791)
공동	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미래차연구처	책임자	처 장	전준호 (031-369-0331)
		담당자	선임연구원	오진주 (031-369-0344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□ (개요)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이상인 업체·사업장이 매년 감축·절약 목표를 설정·이행하도록 관리하는 제도

□ (요건) 교통부문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5만톤 이상이거나, 1만 5천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

※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제외(업체 12.5만톤, 사업장 2.5만톤 이상)

□ (처리절차) ①대상선정(Y년) ⇨ ②실사·목표설정(Y+1년) ⇨ ③이행계획 제출(Y+1년) ⇨ 이행(Y+2년) ⇨ ④이행실적 관리(Y+3년)

① (대상선정) 국토부 후보 업체·사업장 지정(~Y년 4.30) → 환경부검토 → 국토부 최종 지정(관보게제, ~Y년 6.30) → 업체필요시 이의신청

② (실사·목표설정) 업체명세서(설비·공정별 온실가스 배출량)를 국토부에 제출(~Y+1년 3.31), 국토부 누락내용 등을 확인하여 센터(환경부)에 제출(~Y+1년 5.31)

- 국토부 관리대상 업체의 Y+2년 목표(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절약)를 설정하고 관리업체·온실가스센터에 통보(~Y+1년 9.30)

③ (이행계획 제출) 업체 목표달성을 위한 Y+2년 이행계획(설비·공정 현황, 목표 달성방법 등)을 국토부에 제출(~Y+1년 12.31)

- 국토부 업체가 제출한 이행계획을 온실가스센터에 제출(~Y+2년 1.31)

④ (이행실적 관리) 업체 Y+2년 이행실적을 국토부에 보고(~Y+3년 3.31), 국토부 실적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여 센터(환경부)에 제출(~Y+3년 5.31)